

# 2003년도 골판지상자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공고

조합 기획조정팀 제공

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바, 2003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2-150호(2002.12.24)로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 하였다.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(담배·인삼 포장용 제외)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,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된다.

## I.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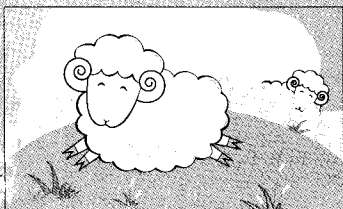
### 1. 총 칙

#### 가. 목 적

이 총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, 제9조의 2 및 동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나. 물품의 명칭 및 분류

- 1) 물품의 명칭분류는 원칙적으로 물품목록분류표의 품명식별번호(7단위, 소분류)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품목분류(8단위)에 의한다.
- 2) 물품목록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은 물품은 수요처규격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에 따라 분류한다.
- 3)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여러품목을 군별로 묶거나 또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. 다만, 여러물품을 군별로 묶어 분류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개별물품명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.



**다. 계약체결 대상조합 및 지역**

- 1) 계약대상 지역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의거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에 의한다.
- 2) "전국조합"은 구매기관이 소재한 구역내 조합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구역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- 3) "지방조합"은 해당 업무구역내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. 다만, 당해 지역에 지방조합이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, 연합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기관은 해당물품을 지정받은 지방조합중 1개의 지방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4)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"연합회"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.
  - ① 2개이상의 업무구역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을 중앙기관이 계획구매하는 경우
  - ② 지방구매기관의 중앙기관 구매의뢰 및 중앙기관이 계획구매에 의거 중앙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
  - ③ 구매기관의 업무구역내에 회원조합이 없거나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과 관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

**라.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**

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중 "중소기업제품구매증대를 위한 조치사항"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

**마. 기타의 규정**

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물량배정, 수혜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"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"에 따라 운영한다.

**2.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: 146개 물품**

2003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([www.smbago.kr](http://www.smbago.kr))에 게재되어 있음

☞ [www.smbago.kr](http://www.smbago.kr) → 정보자료실 → 법령공고 → 공고

☞ 중소기업청(기업진흥과)

전화번호: (02) 503 - 7930 ~ 7931

**<2003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>**

물품 목록번호	특정규격 및 번호	표준산업 분류번호	물 품 명	계약대상 지	조 합 명
8115-050		21211102	골판지상자(담배·인삼 포장용은 제외)	전국	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
		21219101	골·판지상자(골판지상자는 담배·인삼 포장용에 한함)	전국	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